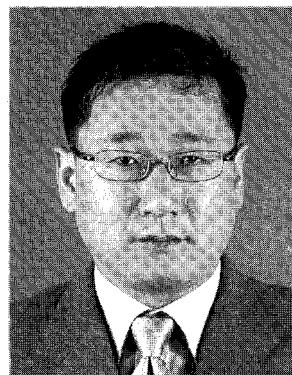


HPAI 방역활동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농장의 철저한 방역활동으로 HPAI 막아낸다

민 권 식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충북도본부 지도과장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는 2003년 12월 10일 충북 음성군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 2004년 3월 20일 경기 양주시를 마지막으로 총 19건이 발생되었으며, 지난 5월 29일 경남 양산지역을 마지막으로 이동제한이 전국적으로 해제되었다. 정부에서는 2004년 9월 21일부로 국제수역사무국(OIE)에 국내종식상황을 통보하였고 이에 일본에서는 국내산 가금육의 수입중단조치를 10

월 13일에 해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6월 16일 인도네시아를 기점으로 베트남(6.29), 태국(7.6), 중국(7.6) 등 총 15개에서 재발·확산되고 있으며, 태국에서는 이종간의 전파로 호랑이가 30여마리가 조류인플루엔자로 폐사하고 유사증상을 보이는 호랑이 30마리를 살처분하기(10월 21일)에 이르렀다.



1.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 HPAI)의 개요

조류인플루엔자는 닭·칠면조·오리·야생조류 등 여러 종류의 조류에 감염되며, 전파가 빠르고 병원성에 따라 고병원성과 비병원성으로 구분된다.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도 List A급 질병으로 분류되며 바이러스의 형청형은 H형(15종)과 N형(9종)으로 구분되고 H5N2, H9N2 등으로 표기한다. HPAI바이러스는 계사내 환경에서는 35일간 생존하며, 냉장보관 폐사체에서는 최장 23일간 생존이 가능하되, 100°C 이상에서 수분이면 사멸되며, 비누액과 세제성분 및 소독제 등에서의 높은 사멸효과가 있다. 이러한 바이러스는 오염된 물·사료, 분뇨등으로 직접 전파되며 인접지역외에는 공기전파 확률은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요 임상증상은 호흡기증상, 산란율 저하(무각·연각란), 활력저하(사료섭취 감소), 청색증, 안면부종, 신경증상, 폐사 등 ND, IB, ILT, MG 등과 유사하므로 이를 질병과의 감별이 중요하다. 닭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사료 섭취율 감소, 닭벼슬의 청색증, 머리와 안면부종, 급격한 폐사(10~80%)와 산란율 저하(40~50%)를 보이며, 오리의 경우 급격한 산란율 저하와 경미한 폐사(산란오리), 큰오리에서는 증상이 없으나 새끼오리 폐사(육용오리) 등으로 다양한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03~'04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현황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관리 지침에 의거 모든 발생지역에서 위험지역(3Km) 및 경계지역(3~10Km)을 설정하여 이동통제 등 강도 높은 방역조치를 시행하였다. 이 결과로 392농가의 닭·오리 등 5,285,000수의 가금류가 살처분·매몰되었으며, 종계장·부화장의 종란, 부화장의 병아리, 도계장·육가공공장의 가공육 등 어마어마한 물량이 폐기·매몰되었다. 또한 이중간의 전파에 의한 변종바이러스 출현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돼지, 개, 염소 등 총 18호 9,700여두가 살처분·매몰되었으며, 이를 위해 축산농가와 관련업계의 경영안정을 위해 1,531억원이 지원되었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가금류 및 닭·오리고기 등 생산물 수입금지, 발생국 운항노선의 선박·항공기 등에 대한 검역·검색이 강화됐으며, 검역이 완료되지 않은 가금육(미국산 등 7,476톤)이 반송 또는 폐기되기도 하였다. 또한, 전국 오리농장(종오리), 역학관련농장 등 혈청검사를 실시(962호 17,623수)하였고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 24개지역에 총 5,460점(분변·혈액)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고, 닭·오리농장에 대한 일일(전화)예찰을 실시하였다. 한편 가금류 농장 및 부화업 종사자 등 관련업 종사자들에게 예방접종을 권장·홍보하였다.

국민들의 가금육 기피현상에 의한 절망적인 가금육산업의 조기 회복을 위하여 시군청 및 농축협의 주도로 닭·오리고기 시식회가 삼계탕, 뒤김 등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국민들을 상대로 크고 작은 행사가 열렸다.

| 특집 · 고병원성AI 발생 1주년에 듣는다



이러한 방역당국과 관련업계의 노력의 결과로 '04년 2/4분기부터는 회복세에 들어섰다.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HPAI는 ND, IB, ILT, MG 등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므로 이들 질병과의 구별이 중요하다. 실제로 음성군 최초 발생농장인 “ㅂ”농장에서도 농장주와 진료수의사 등이 유사질병과의 구분이 어려워 신고가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방역당국에서는 농가가 산란율과 폐사율을 매일 확인하여 5%이상의 변화가 있을 시에는 방역당국에 신고하도록 홍보하고 있다. 또한 산란계와 달리 오리농장의 경우 임상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지난 발생 19건중 오리(종오리포함)농장에서는 농림부의 종오리농장 일제 방역관리지침에 의거 3차에 걸친 일제채혈 및 역학관련 농장 채혈에서 발명을 확인한 경우가 몇건 있다. 이들 농장의 경우 혈청검사 이전에는 전혀 임상 증상도 없고 사료섭취량이나 폐사율에도 큰 문제점을 발견 할 수가 없었다.

3. '03~'04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시의 장·단점

1) 단점

국내 발생이전에 외국에서는 이미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되었으며 태국·베트남 등에서는 공식발표 이전에 발생하고 있었으나 이들 국가간 운항하는 선박·항공기 등에 대한 검역활동이 미흡하였고, 정보부족으로 발생초기에 인체감염에 대한 두려움으로 초기 방역활동시에 인력동원이 거의 없었으며, 언론사의 무분별한 발생농장 현황, 살처분·매몰장면 등의 보도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확대·과장 보도 함으로써 국민들의 가금육에 대한 거부감 및 소비가 급감하였다. 또한 발생·위험지역의 닭·오리는 전두수 살처분·매몰되므로 일반국민에게 유통될 수 없고, 철저한 도축검사를 통하여 일반질병

등 의심되는 가축은 도축에서 제외되어 폐기·처리된다는 사실 홍보에 미흡하였으며, 초기 인력부족으로 언론인 등 사람들의 이동통제가 소홀하여 추가 발생·확산의 여지를 남겼고, 역학조사에 불응하는 농가에 대한 적절한 홍보 및 대처 부족과 노계전문처리업체 등 일부 역학관련자들에 대한 방역관리가 미흡하였다.

2) 장점

발생사실의 신속한 발표와 OIE 등 국제기구 보고로 대국민 및 국가 신뢰 제고, 정책의 투명성을 유지하였으며, 방역당국과 관련공무원의 헌신적인 노력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와 일선 방역요원의 적극적인 지원, 양계협회 등 생산자단체의 협조로 신속한 방역대책 수립·보완·추진이 가능하였고, 발생농장과 역학관련농장의 신속한 예방살처분과 가금류 사육농가의 전화예찰(매일)과 소독지원등을 통해 사육농가의 방역의식 고취와 자율방역 의식을 확대함으로써 이상징후 및 의심축 발견시 조기신고 체계를 상설화 하였다.

4. 향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추진대책

농림부에서는 11월 1일부터 익년 2월 29일까지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음성군을 비롯하여 10개 발생시군과 인접시군 및 가금류 다두사육 시군(경기 안성·평택·포천·고양·김포·용인·화성, 충북 청원, 충남 연기, 전남 영암·함평) 11군을 포함하여 21개 특별 관리시군을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1) 가금류 사육농가 준수사항

- 가금류 사육농가에서는 축사의 외부인 출입을 자제하시고, 농장 입구에 소독시설 설치 및 생선회를 주기적으로 살포하시고 축사(계사)입구에 발판소독조를 필히 설치 운영해야 한다.
- 양계협회 등 축산농가의 모임참석을 자제하며, 외출후 귀가시에는 차량소독후 의복을 갈아입고 농장을 출입해야 한다.
- 사료섭취량 감소, 폐사율증가 등 의심증상 발생시는 관할방역당국, 시군청 및 방역본부에 신고하여 주시고 긴급전화 1588-4060으로 신속히 신고하여야 한다.
- 축산위생연구소(시험소) 및 시군청의 방역관과 관련 공무원 및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요원들의 적절한 예찰과 채혈활동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2) 시·군청 및 축산위생연구소 등 방역당국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요원 등 준수사항

- 가급적 전화 예찰을 실시하고 부득이한 농장방문시에는 농장입구에 차량을 주차시키고 방역복을

| 특집 · 고병원성AI 발생 1주년에 듣는다

입은 후 방역조치 후 출입해야 한다.

- 방역복, 비닐장화, 장갑, 마스크, 주사기 등 방역관리 제품은 일회용을 사용하고 농장에서 소각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 긴급상황이 아닐시는 농장주 또는 농장관리인의 입회하에 출입하시고, 부득이한 경우는 유무선상으로 농장지주의 허가를 득한 후 출입해야 한다.
- 농장주가 예찰·채혈을 거부할 경우 그 필요성을 설명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합법적이고 적절한 조치로 다른 농가와의 형평성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예찰 및 채혈시는 그 결과를 농장주에게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조치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필자는 지금까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관리 사항과 향후 대책에 대해 간단히 적어봤다. 하지만 지난 번에도 언급한 바와 같이 가축방역은 방역당국이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농장주가 스스로 내 농장을 지키는 것이 주요하다. 외출후 소독, 외부인 출입통제, 폐사축의 철저한 위생처리, 의심축(환축)·산란율·폐사율·사료섭취율 등 수시점검을 통한 이상징후 발견시 즉시 신고, 까치·쥐 등 전염원 차단 등 농자주의 철저한 방역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 조류인플루엔자의 유입·재발을 방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양계]**

생석회 ♠ 소석회

- ♣ 산성폐수 및 오수정화
- ♣ 축사소독 및 악취제거
- ♣ 충란 및 병원균 살균
- ♣ 유기질 분해촉진
- ♣ 산성 토양 개량(pH안정)

영월석회공업사

사무실 : 강원도 영월군 남면 창원리 250번지
전 화 : (033)372-5837, 5618, 팩스 : (033)372-5889
전 화 : (033)372-5296, 6878, 야간 : (033)372-5293